

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	즉시
사업자	상호(대표자)		등록번호	
	주소			
매도인	성명(명칭)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전화번호	
매수인	성명(명칭)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전화번호	
매도된 자동차	등록번호		차종	
	차명		형식 · 연식	
	차대번호		원동기형식	
매도종류 ☐ 매매 ☐ 알선위탁			매도연월일	
매도장소			매도금액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·제2항에 따라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었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자동차매매사업조합 귀하

첨부서류	1. 양도증명서 사본 1부	수수료
	2. 상품용 표지 1부	없음

유의사항

○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가 제시된 때,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된 때와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에는 중고자동차의 제시·매도·반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59조제1항).

-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(「자동차관리법」 제81조제26호).